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9
----------	----

2014년 9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9월 3일, 문상모 의원
- 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5일
- 다. 상정결과 :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년 9월 25일, 상정·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문상모 의원)

### 가. 제안이유

-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을 재원으로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내에 야구발전계정을 신설하여 야구장에서 얻어진 광고수입을 야구발전 을 위해 재투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내에 야구발전계정을 신설함(안 제3조).
- (2) 야구발전계정의 재원은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만큼 서

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조성함(안 제4조제2항).

(3) 야구발전계정의 용도를 규정함(안 제5조제2항).

(4)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계정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5) 야구발전계정 기금의 관리·이용 및 계정별 기금의 이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전년도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을 일반회계에서 체육진흥기금 야구발전계정으로 출연.

(3)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 동 조례안은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만큼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내에 야구발전계정을 신설하고 그 기금을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아마추어야구 육성, 기타 야구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체육진흥과는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익을 야구발전에 환원할 것을 원하는 야구팬의 의견을 수용하여 체육진흥기금 내에 야구발전계정을 신설하되,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액 전액이 아닌 상당액을 출연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며,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은 특정 종목만을 지원하기 위한 계정의 신설은 전반적인 서울시 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금 설치 목적에 어긋나고, 일반회계나 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운영 가능한 야구발전 사업을 위해 신규 계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기금내에 특정종목의 계정을 설치하고 광고수입의 전액을 출연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인데,

다만, 잠실야구장 광고수입의 일부를 야구발전 사업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현행 조례에 잠실야구장 광고수입 중 상당액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용도에 야구발전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 기금(계정)의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서울시는 196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를 시작으로 1989년 식품진흥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는 등 현재 1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서울시 기금 현황 별첨).

- 안전행정부는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운용 혁신을 기금운용 원칙으로 하고,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

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을 기금 운용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은 종기일 이전에 존속기한 연장여부를 엄격히 검토하는 등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데(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는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금의 난립을 막고 재정 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함이므로

기금 또는 계정을 신설할 때에는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이 아닌 기금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체육진흥기금 출연의 필요성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정부의 출연금 등 기타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0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적립한 이래 일반회계 출연 없이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만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금의 이자수입이 기금을 처음 집행한 2011년 23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16억원 규모까지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2012년과 2013년 23억원 규모이던 집행액이 2014년 17억원 규모로 축소되었으며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더 감소되었음.

이처럼 점진적으로 기금의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아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재원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잠실야구장 광고수입의 일부를 출연하여 야구발전 사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또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조성액				집행액	조성액과 집행액의 차액	연도말 조성액
	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08년까지	47,965	40,000	7,965	0	0	47,965	47,965
2009년도	6,916	5,000	1,916	0	0	6,916	54,881
2010년도	2,051	0	2,051	0	0	2,051	56,932
2011년도	2,329	0	2,329	0	1,949	380	57,312
2012년도	2,257	0	2,257	-	2,251	6	57,318
2013년도	1,751	0	1,746	5	2,299	△548	56,770
2014년도	1,624	0	1,624	0	1,731	△107	56,663
계	64,893	45,000	19,888	5	8,230	56,664	56,664

□ 체육진흥기금 내 야구발전계정의 신설

- 잠실야구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야구발전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야구팬들의 의견은 일부 타당성이 있으나,

특정 종목만을 지원하기 위한 계정을 신설하여 특정 종목의 시설 인프라 개선과 아마추어 육성, 기타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비인기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체육 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 동 조례안 제9조제4항에서 계정별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계정별 운용기금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타 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지출액이 24억원 ~ 40억원 규모인 체육진흥기금에 연간 지출액 104억원 규모의 야구발전계정을 신설하고 계정별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계정별 운용기금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타 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종목별 균형을 도모하기에는 미흡한 조치라 사료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3,952	3,952	3,649	3,649	2,402	2,402

## □ 기금 출연의 규모

- 동 조례안은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만큼 일반회계에서 야구발전계정으로 출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104억원 규모임.

### <잠실야구장 위탁료 및 광고수익금>

(단위 : 백만원)

	위탁료	계약기간	광고수익금	계약기간
2012년	2,558	'12.1.1 ~ '13.12.31	7,220	'12.1.25 ~ '13.12.31
2013년	2,609		7,220	
2014년	2,550	'14.1.1 ~ '16.12.31	10,350	'14.1.24 ~ '16.12.31
2015년	2,568		10,350	
2016년	2,535		10,350	

그런데 지난 3년간 잠실과 목동 등 야구장의 시설개선 예산은 26억원 ~ 52억원 규모이고, 체육진흥기금의 “학교체육부 창단비 지원” 1년 예산이 2천만원이며, 체육진흥과의 “축구교실(어린이, 청소년, 여성, 유아) 운영지원” 1년 예산이 7억 8천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 조례안에서 야구발전계정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아마추어야구 육성, 기타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모두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연간 34억원 ~ 60억원이면 가능하므로 출연 규모를 광고수익금 전액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야구장 시설개선 예산>

(단위 : 백만원)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구의·신월 등	계
2012년	2,150	995	-	3,145
2013년	3,807	1,110	250	5,167
2014년	1,970	600	-	2,570

<2014년 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비교증감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470	500	△30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280	280	0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80	80	0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20	40	△20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전용훈련장 조성	0	500	△500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879	821	58
스포츠 자원봉사자를 통한 자활지원	0	100	△100
기금관리비	2	2	0
여유자금 예치	672	1,326	△655
계	2,402	3,649	△1,247



[별첨]

<서울시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설치연 도	기금의 설치 목적	2013년도 말 조성액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	지출
합계			4,334,043	919,158	1,405,337
재정투융자기금	1992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 융자	3,338,028	362,916	732,698
중소기업육성기금	1965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운전 및 시설 자금 융자	170,116	362,141	405,741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융자	62,222	6,255	6,373
기후변화기금	2007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 촉진	57,455	12,990	26,580
사회투자기금	2012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 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38,207	3,108	22,476
도로굴착복구기금	1989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12,249	16,802	18,569
여성발전기금	1996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24,178	1,194	972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996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9,021	25,121	25,643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기금	0	10,000	10,000
사회복지기금	1999	노인복지계정	15,869	664	1,029
		장애인복지 계정	16,790	4,148	5,705
		자활계정	9,484	422	980
		주거지원계정	16,282	10,388	14,014
체육진흥기금	2000	체육 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	56,770	1,624	1,731
감채기금	2001	채무 원리금 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	9,250	9,481	9,707
재난관리기금	2003	재난계정	185,984	84,944	112,170
		구호계정	261,340	6,243	821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남북간 교류 및 협력사업의 지원	19,099	446	4,980
대의협력기금	2005	국내협력계정	4,489	67	2,640
		국제협력계정	7,209	205	2,510

## 4. 질의 및 답변요지

문 :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체육관련 사업과 기금으로 편성하는 체육관련 사업은 어떻게 다른가?

답 : 명확한 구분을 짓기는 쉽지 않음. 다만 특정한 사업 목적을 장기간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기금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문 : 11월이면 내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할텐데 내년 체육진흥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

답 :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음. 조례가 통과되어 예산규모가 확정되면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해야 함.

문 : 출연금을 늘려도 체육관련 기존 일반회계 예산이 삭감되고 이번에 증액되는 기금 사업으로 대체된다면 조례 개정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음.

답 : 공감함. 이번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을 증액하는 취지가 체육관련 예산을 좀더 안정적인 재원으로 바꾸자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야구와 다른 종목, 그리고 생활체육 등 체육과 관련해 보다 많은 투자를 추가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함.

문 :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전체를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자는 처음 개정안에 대해 집행부는 시장의 예산 편성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답 : 조례에서 출연금 총액을 확정적으로 명시하면 이는 예산편성권뿐 아니라 심의의결권 또한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편성, 집행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조례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체육진흥기금 내에 야구발전계정을 신설하지 않고,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여,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및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의 범위에서 기금을 지출하되,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함.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고,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및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의 범위에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9
----------	-------

제안연월일 : 2014년 9월 25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수정이유

-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익을 야구발전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야구팬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불안정한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시의 재정부담과 체육 종목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기금 출연 규모와 기금의 용도를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여,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및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의 범위에서 기금을 지출하되,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함.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한다.

안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다만,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포함한다.

안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를 현행 제3조와 같이 하며,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5.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
- 6.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현행 제4조제1항과 제4조제2항과 같이 하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3항제4호와 제3항제5호를 각각 제3항제5호와 제3항제4호로 하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를 각각 제6조와 제7조로 한다.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삭제한다.

-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및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
- ③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제4조제5호의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생략)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현행과 같음)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개정안과 같음)
<신설>	제3조(자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체육진흥계정 2. 야구발전계정	<삭제>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략)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다만, 야구발전계정의 경우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만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개정안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다만,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포함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5. (생략)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체육진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② 야구발전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li> <li>2. 아마추어야구 육성</li> <li>3. 기타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li> </ol>	<p><u>에 필요한 사업</u></p> <p>6.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p> <p><u>&lt;삭제&gt;</u></p>
<p>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p>	<p>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 ---- 제3조에 따른 계정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계정별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각 계정별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계정별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육진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li> <li>2. 야구발전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li> </ol> <p>③ 계정별 심의위원회-----</p>	<p>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u>현행과 같음</u>)</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u>&lt;삭제&gt;</u></p> <p>② (<u>현행과 같음</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u>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u>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lt;신설&gt;</p> <p>1. ~ 4. (생략)</p> <p>5. &lt;신설&gt;</p> <p>④ ~ ⑥ (생략)</p>	<p>-----.</p> <p>④ ----- 문</p> <p><u>화체육정책관</u>-----</p> <p>-----</p> <p>-----</p> <p>----- . 다만, 야구발전계정 심의위원회의 경우 제5호의 야구관계자를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야구관계자</u></p> <p>⑤ ~ ⑦ (현행 ④ ~ ⑥과 같음)</p>	<p>----- 문</p> <p><u>화체육정책관</u>-----</p> <p>-----</p> <p>-----</p> <p>----- . &lt;삭제&gt;</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4. <u>야구관계자</u></p> <p>5. <u>관계공무원 및 기타 체육전문가</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생략)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개정안과 같음)
제5조(수당 등) (생략)	제8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 등) (개정안과 같음)
<p>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p> <p>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p>	<p>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체육진흥계정의 기금</u>-----</p> <p>-----</p> <p>-----</p> <p>-----</p> <p>-----.</p>	<p>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u>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및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u></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 data-bbox="640 320 745 357">&lt;신설&gt;</p> <p data-bbox="640 488 745 525">&lt;신설&gt;</p>	<p data-bbox="763 320 1391 416">③ 야구발전계정의 기금은 매해 일반회계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p> <p data-bbox="763 488 1391 743">④ 기금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다만, 체육진흥사업을 위해 필요하여 계정별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계정별 운용기금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타 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다.</p>	<p data-bbox="1429 264 1599 304">지 아니한다.</p> <p data-bbox="1413 320 2033 472">③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제4조제5호의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p> <p data-bbox="1413 488 1514 525">&lt;삭제&gt;</p>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생략)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개정안과 같음)
제8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 (생략)	제11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 (개정안과 같음)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생략)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생략)	제1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5조와 제6조를 각각 제7조와 제8조로 하고, 제4조의2를 제6조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하고, 제2조의2를 제2조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만,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포함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중전의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문화체육정책관”으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야구관계자

제8조(중전의 제6조)제2항 중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를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및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의 범위 안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제4조제5호의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생략)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현행과 같음)
<p>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다만,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포함한다.</p>
<p>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 4. (생략)</p> <p><u>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u></p>	<p>제4조(기금의 용도)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u></p> <p><u>6.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u></p>
<p>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u>4. 관계공무원 및 기타 체육전문가</u></p> <p>④ ~ ⑥ (생략)</p>	<p>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문 <u>화체육정책관</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야구관계자</u></p> <p><u>5. 관계공무원 및 기타 체육전문가</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생략)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현행과 같음)
제5조(수당 등) (생략)	제7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p>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p> <p>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u>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u>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u>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및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의 범위 안에서</u>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p> <p>③ <u>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제4조제5호의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u></p>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생략)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 (생략)	제10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 (현행과 같음)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생략)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생략)	제12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 등 기타수입금

② 다만,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포함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2.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4.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5.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

## 6.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체육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체육관련 단체의 임직원
3. 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체육관계자
4. 야구관계자
5. 관계공무원 및 기타 체육전문가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체육진흥 담당과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



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금고에 예치·관리 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및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
- ③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제4조제5호의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 3.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의 규정을 따르고,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